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고광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8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고광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이정인, 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장태용, 정지웅, 채수지, 최민규, 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8명)

1. 제안이유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부패방지권익위법”이라 한다)」 및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 법령의 준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,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익제보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선정 심의·의결 사항 일부 삭제(안 제10조 제1항 제2호)

- 나.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 “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, 노무사 등의 수입료” 내용을 “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”으로 변경(안 제13조 제1항 제3호)
- 다.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“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” 조항 신설(안 제14조 제1항 제4호 마목)
- 라.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교육기관의 재정 증대나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“2년 이내” 내용을 “3년 이내”로 변경(안 제14조 제5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익신고자보호법, 부패방지권익위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징송절차에 소요된 비용

제14조제1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- 마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)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공익제보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공익제보자 선정</u></p> <p>3. ~ 11. (생략)</p> <p>② ~ ⑨ (생략)</p>	<p>제10조(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3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⑨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구조금 등 지원)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, 노무사 등의 수입료</u>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13조(구조금 등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</u>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보상금) ① 공익제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p>	<p>제14조(보상금) ① ----- -----</p>

해당하는 사항으로 교육기관의
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
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
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
교육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
청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
이나 판결
가. ~ 라. (생략)

<신설>

- ② ~ ④ (생략)
-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
신청은 교육기관의 재정 증대나
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
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
내,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
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
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⑥ ~ ⑧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
반환 등에 의한 환수
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-----

----- 3년 -----

- 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